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95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이기현 · 손 술 · 임미애
김재원 · 조계원 · 권향엽
김주영 · 김남근 · 신장식
김 윤 · 박지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도록 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을 허위나 조작없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관의 입장권 할인 판매 과정에서 할인내역, 할인주체, 비용 분담 주체 등 매출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영화업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입장권 판매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다양한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및 무료입장권 발행 등으로 실제 입장권 판매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 영화배급업자와 투자자 등이 공정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매출액 산정 및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98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영화상영관입장권 정산 등)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매출액의 산정 및 영화배급업자와의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공지한 영화별 관람요금 및 입장권 판매금액(영화별 및 날짜별로 구분한 금액을 말한다)

2. 할인·무료 입장권 및 초대권 등 무상 제공 내역

3.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카드사 할인 등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화상영관입장권 정산에 필요한 사항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 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할인 또는 무료입장권 발행의 내용과 조건을 영화배급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내역,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화배급업자에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9조의2(영화상영관입장권 정산 등)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매출액의 산정 및 영화배급업자와의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u> <u>1.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공지한 영화별 관람요금 및 입장권 판매금액(영화별 및 날짜별로 구분한 금액을 말한다)</u> <u>2. 할인·무료 입장권 및 초대권 등 무상 제공 내역</u> <u>3.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카드사 할인 등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영화상영관입장권 정산에 필요한 사항</u> <u>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u>

제9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9. (생략) ③ (생략)	<u>경우 할인 또는 무료입장권 발행의 내용과 조건을 영화배급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내역,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9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화배급업자에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u> 6.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